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20

발의연월일: 2020. 8. 31.

발 의 자: 송옥주・김철민・양정숙

인재근 • 이형석 • 윤건영

이수진 • 윤미향 • 정정순

김승남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학교의 범위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이하 "미인가 대안학교"라 함)의 경우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음.

때문에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학교폭력을 하거나 학교 폭력의 피해를 입어도,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 리지 못하고 해당 학생의 학적이 남아있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 원회가 열릴 수밖에 없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을 수업 중에 불러서 조사하는 등 조사·상담 과정에서 신고 학생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에 대하여는 미인가 대안학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상담 과정 및 내용에 대하여도 비밀로서 누설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따른 피해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1조).

법률 제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학교를 말한다"를 "학교 및 제2호의2에 따른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같은 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대안교육"이란 개인의 소질 및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실시하는 학 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제21조제1항 중 "비밀"을 "다음 각 호의 비밀"로 하고,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 1. 학교폭력 관련 조사・상담의 과정 및 내용
-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 별 발언 내용
- 3.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 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2. "학교"란 「초・중등교육	2		
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			
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			
61조에 따라 운영하는 <u>학교를</u>	학교 및 제2호		
<u>말한다</u> .	의2에 따른 대안교육을 실시		
	하는 기관(같은 법 제60조의3		
	의 대안학교는 제외한다)		
<u><신 설></u>	<u>2</u> 의2. "대안교육"이란 개인의		
	소질 및 적성 개발을 목적으		
	로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		
	는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실시하는 학습자 중심		
	의 교육을 말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			
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			

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 피해학생 및 제20조 에 따른 신고자 · 고발자와 관 런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된다.

<신 설>

<u><신</u>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 <삭 제> 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③ (생략)

	<u>다음</u>	각	호
의 비밀			

- 1. 학교폭력 관련 조사·상담의 과정 및 내용
-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 생에 대한 심의 · 의결과 관련 된 개인별 발언 내용
- 3.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 생 및 그 가족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 보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 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 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② (현행 제3항과 같음)